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3. 10. 24(목),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동욱, 김창준, 박경립, 이강근, 이수곤,
장석하, 정명섭, 정혜린(진명), 최성은, 홍승재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 심의 33건 : 원안가결 11건, 조건부가결 9건, 보류 5건, 부결 8건
- 검토 2건 : 원안가결 1건, 보류 1건
- 보고 3건 : 원안접수 3건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공개 |
| 2 |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공개 |
| 3 | | 공개 |
| 4 | | 공개 |
| 5 | | 공개 |
| 6 | () | 공개 |
| 7 | | 공개 |
| 8 | | 공개 |
| 9 | (2) (2) | 공개 |
| 10 | (가) | 공개 |
| 11 | (가) | 공개 |
| 12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공개 |
| 13 |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주변 야영장 내 화장실 증축 | 공개 |
| 14 | 인제 한계사지 남·북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공개 |
| 15 | | 공개 |
| 16 | (2) | 공개 |
| 17 | | 공개 |
| 18 | | 공개 |
| 19 | | 공개 |
| 20 | | 공개 |
| 21 | 가 (2) | 공개 |
| 22 | | 공개 |

| | | |
|---------------|--|----|
| 23 | | 공개 |
| 24 | | 공개 |
| 25 | (가) | 공개 |
| 26 | | 공개 |
| 27 | | 공개 |
| 28 | | 공개 |
| 29 | | 공개 |
| 30 | | 공개 |
| 31 | | 공개 |
| 32 | 경복궁 향원정 소방시설 설치공사 | 공개 |
| 33 |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 공개 |
| 【검토사항】 | | |
| 34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공개 |
| 35 |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전부의 기준 검토 | 공개 |
| 【보고사항】 | | |
| 36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시추조사 계획 변경보고 | 공개 |
| 37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체계 개선 추진 계획 보고 | 공개 |
| 38 |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 택시승강장 설치 -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허가사항 변경) - 경주 울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중 중반소 주변 담장 보수 -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주변 우회도로 개설 -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주변 설선당, 관리동, 화장실 단청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3-10-001

1.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보물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13.08.22.)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3.09.16.~'13.10.15.)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성주군수
- (2) 대상문화재 :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31번지
 - 지정일 : 2008. 09. 03.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기존 보호구역 : 예산리 131번지 4,605㎡
 - 변경 보호구역 : 예산리 132-2번지 외 11필지 17,283㎡ (증 12,678㎡)
- (4) 신청사유
 -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성주향교 주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협의한 대상토지 매입이 완료된 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조정(확대) 신청함.

라. 경상북도 제3차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13.05.03.) : 가결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 신청

마. 경상북도 의견

- 경상북도 성주읍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에 대한 원형복원과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주변 토지매입비를 지원받아 문화재 주변 5필지(7,533㎡) 등 전체 11필지(12,678㎡)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바. 현지조사의견('13.07.10)

- 보호구역은 향교전면으로 경관과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m ²) | 지정구역 (m ²) | 문화재 구역(m ²) | 보호구역 (m ²) | 소유자 | 구분 |
|-------------------|-------|----|-------------------------|---------------------------|----------------------------|---------------------------|--------------|--------|
|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 131 | 대 | 4,605 | 4,605 | 207.8 | 4,397.2 | 경상북도 향교재단 | 기 존 |
| 계 | 1필지 | | | 4,605 | 207.8 | 4,397.2 | | |
|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 132-2 | 전 | 1,157 | 1,157 | | 1,157 | 경상북도 향교재단 | 추 가 |
| | 132-3 | 전 | 1,058 | 1,058 | | 1,058 | 성주군 | |
| | 132-4 | 전 | 727 | 727 | | 727 | 성주군 | |
| | 132-5 | 전 | 3,322 | 3,322 | | 3,322 | 성주군 | |
| | 134 | 전 | 2,063 | 2,063 | | 2,063 | 성주군 | |
| | 133-3 | 대 | 363 | 363 | | 363 | 성주군 | |
| | 221-6 | 전 | 592 | 592 | | 592 | 성주군 | |
| | 221-2 | 차 | 999 | 999 | | 999 | 성주군 | |
| | 221-5 | 전 | 1,523 | 1,523 | | 1,523 | 성주군 | |
| | 212 | 대 | 615 | 615 | | 615 | 경상북도 향교재단 | |
| | 770-6 | 도 | 1,240 | 259 | | 259 | 국유 | |
| 계 | 11필지 | | | 12,678 | | 12,678 | | |
| 총계 | 12필지 | | | 17,283 | 207.8 | 17,075.2 | | |

2.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국보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13.08.22.)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3.09.16.~'13.10.15.)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의성군수
- (2) 대상문화재 :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383-1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기존 보호구역 : 탑리리 709-1번지 외 4필지 1,854.6㎡
 - 변경 보호구역 : 탑리리 704-6번지 외 7필지 4,981.6㎡ (증 3,127㎡)
- (4) 신청사유
 - 현재 주 진입도로는 시가지내 좁은 도로와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재 주변 100m내에는 주거건축물의 불량과 협소한 진입도로 등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훼손 및 탐방객들의 길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 또한, 문화재 탐방객 및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주차장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그동안 탐방객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2010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추가매입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

- 따라서 기 매입한 금성면 탐리리 704-6번지 외 2필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탐방객 주차장 조성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라. 경상북도 제4차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13.06.14.) : 가결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 신청.

마. 경상북도 의견

-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77호 「의성 탐리리 오층석탑」에 대한 원형복원과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주변 토지매입비를 지원받아 문화재 주변 3필지(3,127㎡) 등 전체 8필지(4,981㎡)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바. 현지조사의견('13.07.30)

- 보호구역은 석탑 주변 경관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m ²) | 지정구역 (m ²) | 문화재 구역(m ²) | 보호구역 (m ²) | 소유자 | 구분 |
|-------------------|--------|----|-------------------------|---------------------------|----------------------------|---------------------------|-----|--------|
|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 709-1 | 대 | 400 | 301 | | 301 | 의성군 | 기 존 |
| | 709-2 | 대 | 2,516 | 324 | | 324 | 의성군 | |
| | 711-1 | 대 | 711 | 172 | | 172 | 의성군 | |
| | 711-2 | 대 | 638 | 314 | | 314 | 의성군 | |
| | 1383-1 | 임 | 833 | 764 | 20.4 | 743.6 | 국유 | |
| 계 | 5필지 | | | 1,875 | 20.4 | 1,854.6 | | |
|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 704-6 | 전 | 2,077 | 2,077 | | 2,077 | 의성군 | 추 가 |
| | 704-7 | 전 | 511 | 511 | | 511 | 의성군 | |
| | 711-1 | 대 | 711 | 539 | | 539 | 의성군 | |
| 계 | 3필지 | | | 3,127 | | 3,127 | | |
| 총계 | 8필지 | | | 5,002 | 20.4 | 4,981.6 | | |

3.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주)트레비앙디벨로먼트
- (2) 대상문화재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19번지
 - 지 정 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5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3m
 - 사업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 건축면적 : 764.76m²
 - 연 면 적 : 7,541.28m²
 - 규 모 : 지하1층 / 지상12층
 - 최고높이 : 35.3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4.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넥센타이어 사원아파트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에 넥센타이어 사원아파트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넥센타이어 사원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10m(2층)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넥센타이어(주)
- (2) 대상문화재 :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414
 - 지정일 : 1970. 06. 2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400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190m
 - 사업내용 : 넥센타이어 사원아파트 신축
 - 세대수 : 226세대(24평형, 15평형, 11평형, 8평형)
 - 건축면적 : 2,138.65㎡
 - 연면적 : 17,389.92㎡
 - 동수 및 규모 : 아파트 4동 / 지하 1층, 지상 9층

- 최고높이 : 28.56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 마 감 재 : 금속기와잇기, 토석벽돌치장쌓기

라. 의결사항

- 부결
 -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초과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5.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주변 쓰레기 수거시스템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국보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주변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쓰레기 수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녕군수
- (2) 대상문화재 :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412-20번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00-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80m
 - 사업내용 : 쓰레기 수거시스템 설치
 - 용도 : 음식물쓰레기수거(1식) 및 일반쓰레기 수거(1식)
 - 규모 : 6.2m×1.8m×2.4m(2식)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위치를 조정하고 경관개선을 위하여 지하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6. 밀양 영남루 주변 하천 환경정비(자전거길 조성)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밀양 영남루」 주변에 하천 환경정비로 자전거길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하천환경정비로 자전거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 대상문화재 : 밀양 영남루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활성동, 내일동~상남면 평촌리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20m
 - 사업내용 : 자전거길 조성
 - 길이 : 1,423m
 - 너비 : 2m
 - 포장 : 칼라아스콘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7.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584번지
 - 지정일 : 1978. 03.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80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380m
 - 사업내용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진입로(콘크리트 포장) 조성
 - 대지면적 : 11,326㎡
 - 건축면적 : 1,471㎡
 - 연면적 : 1,673.60㎡
 - 건립동수 : 19동(주택 10동, 근린생활시설 9동)
 - 층 고 : 1층~2층 / 4.550m~7.405m

※ 신청부지는 '13년 6월 위원회에 주변 부지와 함께 주택단지를 조성코자 신청하여 부결(사유 : 신청지가 원지형 보존지역이며 또한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된 지역으로 7월 위원회에서는 금번 신청부지를 제외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가결되었음.

| 구분 | 1차('13.5) | 2차('13.6) | 3차('13.7) | 금차('13.10) | 비고 |
|------|---|---|--|-----------------------------------|----|
| 신청인 | (주)보나미엔비전 | (주)보나미엔비전 | (주)보나미엔비전 | ○○○ | |
| 지번 | 산78번지 외 8필지 (산78, 80, 80-1,-2,-3, 81, 225, 284, 285번지) | 산78번지 외 8필지 (산78, 80, 80-1,-2,-3, 81, 225, 284, 285번지) | 산78번지 외 6필지 (산78, 80-2,-3, 81, 225, 284, 285번지) | 산80번지 외 3필지 (산80,80-1,-2,-3번지) | |
| 대지면적 | 21,576㎡ | 21,576㎡ | 14,770㎡ | 11,326㎡ | |
| 건축면적 | 3,839.58㎡ | 2,547.20㎡ | 2,084.4㎡ | 1,471㎡ | |
| 연면적 | 4,447.08㎡ | 2,952.20㎡ | 2,469.14㎡ | 1,673.60㎡ | |
| 건립동수 | 44동(근린생활 시설 14동, 주택 30동) | 32동(근린생활 시설 13동, 주택19동) | 26동(근린생활 시설 7동, 주택 19동) | 19동(근린생활 시설 9동, 주택 10동) | |
| 층고 | 1층 및 2층 / 5.225m 및 7.605m | 1~2층 / 2.225~7.605m | 1~2층 / 4.55~7.41m | 1층~2층 / 4.550m~7.405m | |
| 회의결과 | 부결 | 부결 | 원안가결 | |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8명, 보류 2명

8.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보물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 주변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 (2) 대상문화재 :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3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30m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신축
 - 건축면적 : 24㎡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3.6m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부대시설 : 오수정화장치, 장애인경사로, 태양광가로등(4.5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면을 조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9.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단독주택(지상2층) 신축(2차)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지상2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8.22) : 부결
 - 역사문화경관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울주 천전리 각석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번지
 - 지정일 : 1973. 05. 0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17-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425m
 - 사업내용 : 단독주택(지상2층) 신축

| 구분 | 1차 | 2차 |
|------|---------|------|
| 건축면적 | 105.78㎡ | 변경없음 |
| 대지면적 | 1,116㎡ | |

| | | |
|---------|----------|--|
| 용도 및 층수 | 주택, 지상2층 | |
| 건물높이 | 7.1m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 지붕구조 | 평지붕 |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10.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허가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월악산 국립공원사무소
- (2) 대상문화재 :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번지
 - 지정일 : 1964.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1-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90m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신축

| 구분 | 기허가('12.01.26) | 변경신청 |
|------|----------------|------------|
| 건축면적 | 18.3㎡ | 18.3㎡ |
| 건축규모 | 지상1층 | 지상1층 |
| 지붕형태 | 한식기와, 한식목조 | 한식기와, 한식목조 |

| | | |
|------|-----------------------|------------------------|
| 건물높이 | 4.56m | 4.4m |
| 피트면적 | H = 2.2m, B = 7.2m | H = 3.2m, B = 8.9m |
| 허가기간 | 2012.1.20 ~ 2013.1.20 | 2012.1.20 ~ 2013.12.31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11. 산청 율곡사 대웅전 주변 유실법면 임시복구(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율곡사 대웅전」 주변 유실법면 임시복구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유실법면 복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산청군수
- (2) 대상문화재 : 산청 율곡사 대웅전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034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034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5m
 - 사업내용 : 유실법면 임시복구

| 구분 | 기허가('13.03.13) | 변경신청 |
|------|---|---|
| 허가내용 | L형 옹벽(H=3m, L=17m) 설치 괘잡석 찰쌓기(H=2m, L=6m) 줄뿌리기(55㎡) | 반중력식 옹벽(H=3m, L=17m) 설치 씨드스프레이(100㎡) |

라. 의결사항

○ 보류

- 외부 용벽 마감 검토 등 설계도면을 보완하여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9명, 부결 1명

12.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보물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1층)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6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8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19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 : 95.77㎡
 - 연면적 : 136.75㎡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2층 / 7.75m

라. 지방자치단체(거창군) 의견

- 본 건은 국가지정문화재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2구역(최고높이 7.5m(1층))에서 이루어지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최고높이 7.75m, 2층)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며,
- 또한, 사업예정지가 거창군문화유적분포지도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일부 포함됨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발굴을 선행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
 - 건물높이는 7.5m 이내로 축소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13.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주변 야영장 내 화장실 증축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주변 야영장 내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 (2) 대상문화재 :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583
 - 지정일 : 1992. 01. 1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산105-4번지 외 4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40m
 - 사업내용 : 야영장 내 화장실 증축
 - 건축면적 : 243.44㎡(+23.45㎡)
 - 연면적 : 243.44㎡(+23.45㎡)
 - 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3.1m

라. 지방자치단체(산청군) 의견

-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의거하여 1구역 원지형보존구역이므로 문화재청으로 진달하여 처리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14. 인제 한계사지 남·북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 인제군 소재 보물 「인제 한계사지 남·북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기존 건축물(휴게소)을 철거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천연기념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임.
- ※ ‘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0.01.21) 조건부 가결(정화조 및 관로부분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여 시행) 되었으나 허가기간 내 미착수로 취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
 - 당초 허가내용 : 휴게소 대수선 / 금회 신청내용 : 휴게소 신축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인제 한계사지 남 삼층석탑, 인제 한계사지 북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90-4, 산1-67
 - 지정일 : 1998. 04. 0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90-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내(삼층석탑에서 70~80m)
 - 사업내용 : 기존 건축물(휴게소) 철거 및 신축
 - 기존 시설물 철거 : 휴게소(산장) 1동(275.6㎡, 지하1층 지상1층)

- 휴게소 신축(1동)
 - 건축면적 : 300.8m²
 - 연 면 적 : 380.2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하1층 지상2층 / 9.3m

※ 한계사지는 1985년도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7세기부터 17세기까지 사용된 사찰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당지 주변의 중심사역에 대한 발굴조사만 이루어져 전체적인 사역의 범위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임.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15.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 주변 선방 건립(2차)

가. 제안사항

경북 문경시 소재 보물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 주변에 선방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선방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9.2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 (2) 대상문화재 :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
 - 소재지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 1-1 봉암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54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100m
 - 사업내용 : 선방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03.68㎡ (103.68㎡) (정면5칸, 측면3칸)
 - 건축구조 및 양식 : 한식목구조, 홑처마 팔작지붕, 민도리 5량가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 7.59m

라. 현지조사의견('13.10.11)

- 사찰의 중심 영역에서 조망되지 않는 상당히 먼 곳으로 건립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단, 터파기시 관계전문가가 입회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터파기공사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16. 공주 갑사 철당간 주변 내원암 요사채 신축(2차)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갑사 철당간」 주변에 내원암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9.2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갑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공주 갑사 철당간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8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43번지 외 2필지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350m
 - 사업내용 : 요사채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71.28㎡ (86.4㎡) (정면3칸, 측면2칸)
 - 건축구조 및 양식 : 1층 RC조, 2층 한식목구조, 홑처마 맞배지붕, 민도리

- 층별 용도 : 1층 창고, 2층 요사채
- 층수 및 최고높이 : 2층 / 9.53m

라. 지방자치단체(공주시) 의견

- 갑사 내원암은 법당과 요사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당은 충청남도 유형 문화재 제211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존의 요사채는 슬레이트가 이어진 건축물로 노후되어 생활이 불편함. 주지스님의 거처와 신도들과의 다실로 활용하기 위해 요사채를 건축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마. 현지조사의견('13.07.10)

- 신축부지는 내원암의 진입부 측면에 해당되어 지하층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지형단차를 이용하여 2층으로 신축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내원암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양간과 화장실은 차제에 철거하면서 신축 요사채를 지형차가 적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높이를 축소하며, 입면을 주변과 어울리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17.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수월암 요사채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보물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수월암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운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산 222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210m
 - 사업내용 : 요사채 신축
 - 건축면적 : 73.45m²
 - 연면적 : 186.27m²
 - 건축구조 및 양식 : 지하층 RC조, 1층 한식목구조, 홑처마 맞배지붕, 익공
 - 층별 용도 : 지하1층 → 목욕탕 및 화장실 등 / 지상1층 → 방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하1층, 지상1층 / 6.2m

라. 지방자치단체(의성군) 의견

- 보물 제246호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으로부터 21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산속에 위치하여 신축시 문화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의 규모와 입면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18. 의성 탐리리 오층석탑 주변 철도 건설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국보 「의성 탐리리 오층석탑」 주변에 철도를 건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철도를 건설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사항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2) 대상문화재 : 의성 탐리리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오층석탑길 5-3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탐리리 1383번지 1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10m
 - 사업내용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철도 건설 (추후 기존 철도 철거 예정)
 - 목적 : 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기능 강화,
남북지역 내륙을 통과하는 일괄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철도 기능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길이 : 1,008.04.m (제5공구 총길이 : 26km)

- 문화재와 이격거리 : 기존 100m → 건설 110m
- 철도 위치 : 기존 철도에 인접하여 성토 후 설치
- 진동방지대책 및 방음대책
 -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 기존 철도운행 및 장래 철도운행의 진동영향 비교

(2013.9.2. 측정)

| 진동측정 지점 | 운영 시 진동예측 | | 목표기준 | 비고 |
|-------------|-----------|------|-----------|---------|
| | 기존 | 장래 | | |
|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 41.5 | 54.1 | 60(dB(V)) | 목표기준 이하 |

※ 목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제3항과 관련한 생활진동 규제기준 상 주거지역 등 주간 기준에 의함.

라. 지방자치단체(의성군) 의견

- 국보 제77호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주변 철도 증설은 의성군 여건상 기존 철로에 신축하는 것으로 영향검토서 및 진동 확인서로 확인하였으며, 의성군에서는 영산 금성산 쪽 및 다른 대안이 나왔으나, 가장 최적의 기존 철로를 이용하는 결로 의성군에서 원하고 있음.
- 국보 제77호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주변 철도 증설은 많은 기간을 검토한 사항으로 군수님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도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 주시길 요청.

마. 의결사항

- 보류
 - 진동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출 후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19.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주택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충남 당진시 소재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에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원지형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지앤지개발(주)
- (2) 대상문화재 :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정미면 원당골1길 188(수당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690-3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6m 이격
 - 사업내용 : 주택단지 조성(단독주택 5동) 및 내부 도로 개설 등
 - 토목공사 : 플룸관(257m), 집수정(7ea), 조경석(508m²), 사면(111m²),
오수관(46m), 단지포장(871m²), 절토(915m³), 성토(822m³)
 - 단지 내 도로 : 787m²

- 동별 건축개요 (단독주택 5동)

| 구 분 | 1~4동 | 5동 | 합계 |
|-----------|--|-------------------|---------------------|
| 대지면적 | 650m ² | 827m ² | 3,427m ² |
| 건축면적(연면적) | 89.32m ² (89.32m ²) | | 446.6m ² |
| 건축구조 | 조적조, 아스팔트 싱글잇기 | | |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5.45m | | |

라. 지방자치단체(당진시) 의견

- 안국사지 석불입상과 사업 신청지와의 거리가 200m이나 중간지점에 산이 있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20.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에 전투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전투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공통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천시장
- (2) 대상문화재 : 영천향교 대성전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지당길 5(교촌동)
 - 지정일 : 1978. 04. 1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창구동 산5번지 외 74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0m
 - 사업내용 :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
 - 사업면적 : 92,692m²
 - 1구역 내 사업 : 충혼탑 주변정비
 - 기존 충혼탑 철거 후 새로운 충혼탑 건립 및 주변 광장 도입

- 공통사항 내 사업(현상변경 허용기준 5구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영천전투전망타워 신축, 지휘통제센터 신축, 시가전체험장, 체험광장, 국군훈련장, 고지전체험장, 연병장, 주차장
 - 경사지(임야)를 절·성토하여 3m이상의 범면 발생

라. 지방자치단체(영천시) 의견

- 영천향교대성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내를 포함한 사업이므로 문화재청 개별심의사항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21.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2건)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보물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2층) 및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2층)”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달성 현풍 석빙고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86 (상리)
 - 지정일 : 1980. 09. 16.
- (3)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2건)
 - 《A동》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97-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5m
 -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 대지면적 : 308.7㎡
 - 건축면적(연면적) : 184.44㎡(523.03㎡)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및 높이 : 4층, 13.6m

《B동》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98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7m
-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 대지면적 : 315.3m²
 - 건축면적(연면적) : 188.45m²(525.94m²)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및 높이 : 4층, 13.6m

라. 지방자치단체(달성군) 의견

-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검토(심의)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22.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보물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1층)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관촉로1번길 25 (관촉동)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논산시 관촉동 229-2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200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커피숍)) 신축
 - 건축면적 : 45.1㎡
 - 연면적 : 82.16㎡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트러스지붕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2층 / 7.4m

라. 지방자치단체(논산시) 의견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23.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주변 산지사방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주변에 산지사방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
- (2) 대상문화재 :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792
 - 지정일 : 1984. 07. 05.
- (3) 신청내용 : 산지사방사업
 -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산25-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70m
 - 사업내용
 - 돌기슭막이 : H=1.5m, L=26m / H=1.5~2m, L=15m / H=2m, L=141m
 - 돌붙임 : 45m² / 떼붙임(평떼+줄떼) : 806m²
 - 콘크리트포장(t=20cm) : 667m²
 - 씨뿌리기(줄파종) : 50m
 - 묘목류 식재 : 180본

라. 지방자치단체(영천시) 의견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내에서의 사업으로 문화재청 개별심의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기존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토록 함.
 - 석축 설치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24.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부도암 목욕탕 개축 및 찾방 신축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에 부도암 목욕탕을 개축하고 찾방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목욕탕 개축 및 찾방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대구 동화사 대웅전
 - 소재지 : 대구 동구 도학동 35
 - 지정일 : 2008. 04.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동구 도학동 8번지 외 1필지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455m
 - 사업내용 : 부도암 목욕탕 개축 및 찾방 신축

| 구 분 | 목욕탕 개축 | 찾방 신축 |
|-----------|--|------------------|
| 연면적 | 84.74m ² (기준 : 76.38m ²) | 30m ² |
| 건축구조 및 양식 | RC조 | RC조 |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하1층, 1.9m(계단지붕) | 지상1층, 4m |

라. 지방자치단체(동구청) 의견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진달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의 형태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25. 서울 흥인지문 주변 숙박시설 건립(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흥인지문」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2002년 건조물분과 심의결과 : 가결
 - 지하 3층, 지상 8층(높이 33.5m), 건축면적 3,022.30㎡, 판매 및 업무시설
- ※ 2003년 건조물분과 심의(허가사항 변경) 결과 : 가결
 - 지하 4층, 지상 7층(높이 33.5m), 건축면적 3,054.9㎡, 판매 및 업무시설
- ※ ‘11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허가사항 변경) : 조건부 가결
 - 지하 6층, 지상 10층(높이 34.7~35.9m), 건축면적 2,290.00㎡, 숙박시설
- ※ ‘13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허가사항 변경) : 조건부 가결
 - 조경계획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동승
-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89-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3.9m
- 사업내용 : 숙박시설 건립
 - 대지면적 : 5,146.10m²(변경없음)
 - 건축면적 : 2,322.14m²(변경없음)
 - 규모 및 높이 : 지하 6층, 지상 10층 / 35.9m(변경없음)
- 주요변경 내용 : 지하 6층 하부 PIT층 평면 및 레이아웃변경
 - PIT 면적 변경 : 당초 1,101.24m², 변경 1,380.02m²(증 278.78m²)
 - 용도 및 평면 변경 : 당초 물탱크실 층수 조정 후 관리층 설치 등
 - 지하층 층고 변경 : 지하층 깊이 당초 30.8m, 변경 32.7m
 - 변경내용 : 지하 3층 층고(당초 3.8m, 변경 4.1m), 지하 6층(당초 3.3m, 변경 3.6m), PIT층 당초 4.2m, 변경 5.5m)
 - 변경사유 : 상세설계에 따른 소방설비, 기계설비의 배관, 덕트 등 반영에 따른 변경

라. 지방자치단체(종로구) 의견

- 지하6층 하부 PIT평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26.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선착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군 소재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에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선착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여주군수
- (2) 대상문화재 :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여주읍 천송리 28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연양동 454-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70m
 - 사업내용 : 선박운항을 위한 선착장 설치
 - 설치면적 : 403㎡(15m×25m 장방형 방부목 널깔기, 1.2m 스틸난간설치)
 - 최고높이 : 3.5m(창고 및 대기실(40㎡))
 - 설치구조 : 부력제 위 방부목 마감(창고 및 대기실 목구조)
 - 운항선박 체원 : 전장 11.43m, 전폭 3.63m, 배수량 6.67ton

라. 지방자치단체(여주군) 의견

- 신청 위치는 신륵사 남쪽방향, 남한강 건너편 약 270m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신륵사 조사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27.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 산불소화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 양평군 소재 보물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주변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평군수
- (2) 대상문화재 :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 소재지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 99번지 6호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 99번지 6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4m
 - 사업내용 : 산불소화시설 설치
 - 시설내용 : 수관수막시설(타워) 3개소, 기계실 및 물탱크실 1개소
 - 수관수막시설(타워형) : 높이 17m 및 29m
 - 기계실 : 면적 21㎡(평면 6m×3.5m), 높이 3.2m
 - 물탱크실 : 직경 5m, 원통형물탱크(용량 50Ton)

라. 지방자치단체(양평군) 의견

- 본 사업 신청지는 용문사 정지국사부도 및 비,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 1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정지국사부도 및 비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44m 가량 이격되어 있음. 용문사 내 목조 건축물 및 문화재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28.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석산개발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에서 석산개발 및 토석채취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서 석산개발 및 토석채취를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5구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하며, 경사지를 성·절토하는 것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삼표 파주사업소
- (2) 대상문화재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08번지 14호 외 8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66m
 - 사업내용 : 석산개발 및 토석채취
 - 사업목적 : 토석채취를 위해 현재 이용중인 기존 석산의 인접토지를 석산으로 편입하고자 함.
 - 편입토지 현황 : 84,458㎡
 - 절토높이 : 0 - 105.1m
 - 절토량 : 2,451,420㎥
 - 참고사항 : 소음진동 영향 검토결과 진동허용기준 0.2cm/sec 이하로 예측됨.

라. 지방자치단체(파주시) 의견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발파와 관련하여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발파시 문화재에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29.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공장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에 공장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장 건물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에 위치하나, 공통사항 “3m이상의 옹벽 설치”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2리 산19
 - 지정일 : 2001. 09.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70-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50m
 - 사업내용 : 공장 건립(건물 8동)
 - 대지면적 : 13,724㎡
 - 건축면적(연면적) : 2,146㎡(2,146㎡)
 - 건축구조 : 일반철골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10m

- 건축면적 조서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m ²) | 비고 |
|----|-------|-----|---------------------|-----|
| 1동 | 일반철골조 | 공 장 | 760.00 | 1부지 |
| 2동 | 일반철골조 | 창 고 | 198.00 | |
| 3동 | 일반철골조 | 사무실 | 198.00 | |
| 4동 | 일반철골조 | 공 장 | 198.00 | 2부지 |
| 5동 | 일반철골조 | 공 장 | 198.00 | |
| 6동 | 일반철골조 | 공 장 | 198.00 | |
| 7동 | 일반철골조 | 창 고 | 198.00 | |
| 8동 | 일반철골조 | 사무실 | 198.00 | |
| 합계 | | | 2,146.00 | |

라. 지방자치단체(파주시) 의견

- 현상변경 기준안 4구역(도시계획조례 의거 처리)에 공장부지 조성하는 것으로, 공통사항(절성토 및 옹벽 기준) 초과로 신청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장명등 방향에 둔덕과 수목 식재를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30.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132번지 1호, 132번지 7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9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건립
 - 대지면적 : 714㎡
 - 건축면적(연면적) : 370.2㎡(360.0㎡)
 - 건축구조 : 일반철골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7.416m

라. 지방자치단체(나주시) 의견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필요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31. 제주 관덕정 주변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제주시 소재 보물 「제주 관덕정」 주변에 횡단보도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횡단보도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제주 관덕정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983번지 1호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983번지 1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내
 - 사업내용 :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
 - 설치내용 : 교통신호기 2기
 - 제원 및 형태 : 250A 원형, 높이 8m, 내민길이 9m

라. 지방자치단체(제주시) 의견

- 위 사항은 국가지정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앞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건임.

- 신청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영향 여부 검토 결과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라는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있었음. 관덕정 앞 횡단보도에서 해마다 몇 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지구로서, 교통신호기 설치의 필요성검토가 제기되는 상황임.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9명, 부결 1명

32. 경복궁 향원정 소방시설 설치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경복궁 향원정」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불꽃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복궁 향원정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자동화재속보설비(불꽃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경복궁관리소장)
- (2) 대상문화재 : 경복궁 향원정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 (3) 사업내용
 - 사 업 명 : 경복궁 향원정 소방시설 설치공사
 - 사업내용 : 경복궁 향원정 주변 불꽃감지기 설치 2개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검토의견

- 동 사항은 지난 2013.7월 종로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관계 전문가 자문의견(2013.09.06)

- 향원정 불꽃감지기 설치는 설계대로 함이 무방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33.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가. 제안사항

경기 남양주시 소재 보물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주변의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에서 제안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남양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보물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3번길 186(조안면 송촌리1060)
- (3) 신청내용(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구 분 | 허 용 기 준 | | 비 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3:10 이상) | |
| 제1구역 | ○ 원지형 보존 | | |
| 공통사항 |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 |

라. 검토의견

- 남양주 수종사는 운길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잘 보존된 상황이고 주변에 개발 여건이 없는 상황이므로 전체를 1구역으로 보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3-10-034

34. 나주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호 「나주금성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나주시 소재 전라남도유형문화재 「나주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호 「나주 금성관(羅州 錦城館)」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길 8 (나주시 과원동 109-5)
 - 지정일 : 1972. 01. 29.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나주 금성관(羅州 錦城館)
 - 소유자(관리자) : 나주시(나주시)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 (나주시 과원동 109-5)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규모 : 금성관(정청·동익헌·서익헌), 월대, 박석유구
 - 재질 : 목조와가, 석재월대, 석재박석
 - 수량 : 1동
 - 양식 : 목조 / 주심포 다포 절충양식 / 정청 양익헌 월대 박석

라. 현지조사의견(2013.06.07)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보완 필요).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보류
 - 수리기록 등 자료보완 후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13.06.07 | 대상문화재 | 나주 금성관 | | |
| 조 사 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한국건축사 | |
| | 소 속 | | 직위(직책) | 교수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①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 | | |
| | ② 문화재 명칭 | 나주 금성관 | | | |
| |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별지참조) | | | |
| | ④ 연혁·유래 및 특징 | (별지참조) | | | |
| |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별지참조) | | | |
| |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 | |
| | | <보호물> | | | |
| | | <보호구역> | | | |
| 보호 관리 사항 |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 | | |
| 검토 |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 종합의견 | (별지참조) | | |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2013년 9월 ○○○ | | | | |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나주객사는 진산인 금성산을 배경으로 읍성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나주읍성은 고려시대에 이미 축성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여러번의 중수를 거친 후 세조 3년(1457)에서 5년(1459) 사이에 당시 나주 목사였던 김계회에 의해 완성되었다. 읍성은 나주천을 포함하고 있는 평지성으로 1872년에 제작된 나주목지도를 보면 말각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읍성의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동점문, 서성문, 남고문, 북망문)을 설치하였고, 각 문에서 이어지는 성내 주도로는 객사 앞에서 모이는 형태이다. 객사를 중심으로 주위에는 아사와 읍창, 향청 등 관아들이 자리하고 있어 객사는 위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읍성의 전체 공간체계에서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2. 연혁

금성관은 나주 객사의 정청이다. 나주객사의 정확한 건립 년대는 알 수 없지만 1403년 객관의 동헌인 벽오헌에 대한 『동국여지승람』 기록으로 보아 이전에 객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성관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목사 이유인(재임기간 : 1487~1491)이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유인은 객사의 문루인 망화루를 건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때 나주 객사는 정청과 익헌, 삼문을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명정(趙明鼎)이 쓴 「금성관중수상량문」에 의하면 금성관은 1617년(萬曆 45)에 중수하였으며, 1775년에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금성관을 다시 중수하였다. 이하곤(李夏坤)의 문집 『頭陀草』의 「南遊錄」에는 금성관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데 광해군 때 목사 김개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금성관을 크고 화려하게 조성하였다고 한다. 금성관은 1919년에 군청사로 사용하면서 외부 벽체와 창호, 내부 등이 개조되었으며, 1963년에 개축한 후 1976년에 전면 해체 수리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금성관 건물은 정면 5칸 규모에 지붕도 팔작지붕으로 조선시대 일반적인 객사의 규모나 형식과 어긋난다.

조선시대 객사 정청은 정면 3칸이 일반적이며, 지붕의 형태도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금성관 정청이 현재이 정면 5칸으로 확장된데 대해 지정신청서에서는 광해군 때(1616-1617) 목사 김개의 중건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南遊錄」 기사를 유일한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이 때 정면 5칸으로 확장되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청은 기능상 수령이 초하루와 보름에

실내에 전패를 모시고 임금에게 절을 올리는 건물이므로 정청을 5칸으로 확장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정청 좌우 기단은 발굴조사 결과 본래의 것이 아니고 후대에 확장된 것이라는 견해 역시 광해군 때 이 건물이 확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1910년대 촬영한 금성관 전경 사진도 정청이 팔작지붕 건물인지 불분명하다. 조사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건물 지붕 가구 구조 및 기단부 축조기법으로 판단해 볼 때 1963년에 좌우 각 1칸씩 확장하고 지붕을 팔작지붕으로 개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건물 지붕 가구는 중앙 3칸의 맞배지붕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 좌우에 추녀를 걸고 서까래를 연결해서 좌우 1칸을 증축하고 팔작지붕으로 개조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현재로는 1963년 개수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창호는 사방에 세살분합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인 객사 정청의 창호는 3면을 벽으로 마감하고 전면만 창호를 달거나 살창으로 처리하는 것과 다르다. 이들 창호는 1963년이나 1976년에 충분한 고증 없이 개조한 결과로 판단된다.

4. 종합의견

나주 금성관은 조선시대 굴지의 나주목 객사 정청 건물로 조선초기 이전 건립 이래 원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역사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다만, 건물의 규모나 형식 및 좌우 익사는 아래와 같이 객사 본래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첫째, 현재의 정청인 정면 5칸 규모에 팔작지붕을 한 모습은 조선시대 객사 정청의 일반적 규범인 정면 3칸에 맞배지붕과 다르다. (그 원인은 조사자의 의견으로는 1963년 개수시에 확장, 변형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정청의 창호 역시 일반적인 객사 정청과 다르다.

셋째, 동서 익사는 각각 2004년과 2008년에 지어졌으나 이미 정청이 규모가 확장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 원형대로 복원하기 불가능한 여건에서 임의로 지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대에 원형 고증 없이 임의로 증개축한 상태로 남아있는 금성관은 객사 정청 본래의 형태 및 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보물지정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13.06.07 | 대상문화재 | 나주 금성관 | | |
| 조 사 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한국건축사 | |
| | 소 속 | | 직위(직책) | 교수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① 문화재 종류 |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호 | | | |
| | ② 문화재 명칭 | 나주 금성관 | | | |
| |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별지참조) | | | |
| | ④ 연혁·유래 및 특징 | (별지참조) | | | |
| |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별지참조) | | | |
| |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 | |
| | | <보호물> | | | |
| | | <보호구역> | | | |
| 보호 관리 사항 |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 | | |
| 검토 |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 종합의견 | (별지참조) | | |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2013년 9월 ○○○ | | | | | |
| 문화재청장 귀하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 ○○○○

2. : 보물

3. : 나주 금성관(羅州 錦城館)

4. : 금성관¹⁾은 나주객사의 정청으로 진산인 금성산을 멀리 등지고 남향으로 앉아 원래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 현재 이곳은 나주시의 중심부인 과원동으로 주변에 주택가와 상가가 어우러진 시가지이다. 지금과 달리 이 일대는 조선시대 때 금성관을 중심으로 한 객사를 비롯하여 구휼미 저장창고인 사창, 향청 등의 관아시설들이 차지하고 있던 곳으로 호남 서남부의 행정 및 군사중심지였던 나주의 주요한 역사문화유적지이다. 현재 객사 경내에는 전면 유구발굴조사(2002~2006년 : 3차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 문루인 망화루를 비롯한 중삼문·동익헌·서익헌을 중건하는 등 옛 모습을 상당 부분 되찾았다. 이들 건물 이외에도 사마교비(전남 문화재자료 89호)·금성 토성비(전남 문화재자료 175호)·우물 그리고 객사 뒷마당의 노거수 등이 자리하여 역사적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다.

이런 객사 유적지는 좌측 가까이에 있는 목사내아와 그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복원(2011년)한 서성문 그리고 나주향교(대성전 : 보물 394호)와 더불어 나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있다.

5. : 금성관의 연혁 및 유래에 대한 각종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면, i) 『금성일기』(1369)에 사신들이 유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명 사신 설사와 장녕공주가 나주에 온 사실’, ii) 『동국여지승람』(1481)의 전라관찰사 이행(1342~1432)이 재임 중이던 1403년(태종 3)에 ‘벽오헌’(객관 동헌)이라 명명한 시, iii) 목사 김춘경과 통판 오한이 벽오헌을 1480년에 중수하면서 그 규모를 넓혔다는 서거정(1420~1488) 문집 『사가집』에 실린 벽오헌 중수기, iv)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정청을 ‘금성관’이라한 별칭이 처음 나타나고, 목사 이유인(재임기간 : 1487~1491)이 정청을 지었다는 기록, v) 1617년 중건²⁾과 1775년 금성관을 개수했다는 노포 조명정(1709~1779)의 「금성관중수상량문」, vi) 목사 윤흡(재임기간 : 1740~1743)의 「망화루 중수기」에 ‘...금성관은 나주의 객관으로 그 크기와 화려함이 우리나라 공해 가운데 제일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라는 기록, vii) 속수라주지(1920)에 목사 박규동(재임기간 : 1884~1886)이 중수하고 1919년 이후부터 군청사로 사용³⁾, viii) 1963년에 군수 박원근이 금성관을 개수했다는 상량문, ix) 1976년에 금성관을 복원하였

1)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임.

2) 『나주목읍지』(1815)에는 목사 김개(재임기간 : 1616~1617)가 1616년에 금성관을 중건했으며, 이 중건에 대해서 담헌 이하곤 문집 『두타초』의 『남유록』에는 ‘금성관은 지극히 웅장하고 화려한데, 광해군 때에 목사 김개가 창건한 것이다’라고 했음.

3) 군청으로 사용됐다는 매일신문 기사가 있음.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에서 금성관을 언제 창건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자리에 1403년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15세기 후반에 실존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15세기에 집중적으로 건립한 조선시대 객사의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 한다. 그 후 금성관의 내력 중에 중수·개수·중건 등 건축공사용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의 오기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내용은 「금성관중수상량문」의 1617년 중건과 「망화루 중수기」에 금성관이 여느 정청과 달리 비교적 규모가 화려함을 명시한 기록을 통해서 금성관의 지금 모습이 그 때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7세기는 객사가 전패를 봉안하고 이에 대해 행례를 올리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는 시기로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금성관을 군청으로 사용하던 1919년은 조선시대 객사가 1909년 이후로 정청에 봉안된 궐패의 기능이 점차 어진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밟은 뒤 한일합방 이후 객사가 고유의 상징성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과도 같다. 이런 변화과정을 거친 금성관은 1963년에 변용한 부분을 개수하고 1976년에 복원 차원에서 완전 해체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금성관은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주간은 정칸을 가장 넓게하고 협칸과 뒷칸 순으로 좁게하였는데, 뒷칸은 정칸의 반 정도로 상당히 좁다. 내부는 10본의 내진고주를 세우고 전체에 마루바닥을 깔았다. 건물 외벽은 네 면의 정칸·협칸에는 4분합급널교살 여단이 문이 달려있고, 뒷칸에는 관머름을 설치한 두 짝 교살창이 나있다. 이들 창호 상부에는 모두 교살 고창을 설치하였다. 외벽의 모든 주간에 창호를 시설한 평면과 입면구성은 객사 정청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으로 궁전의 정전과 유사하다. 특히 정면 5칸의 칸수는 정청과 양익헌이 분리된 일반 읍치 객사⁴⁾의 3칸보다 큰 규모로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기단은 정면을 화강암 장대석 바른층으로, 나머지는 자연석 바른층과 허튼층을 혼용하여 쌓았다. 정칸 앞쪽에는 월대에서 오르는 정칸 폭의 계단이 있고, 정면의 정칸 및 협칸과 좌·우측면의 협칸에는 내부 출입 계단이 놓여 있다. 정면 기단 앞의 월대는 기단보다 폭이 좁으며, 화강석 두 벌대 높이로 쌓고 전바닥을 깔고 정면과 좌·우측면에 계단을 설치하였다. 월대⁵⁾는 궁전 건축에서 주로 시설하는 것으로 낙안객사와 진주객사⁶⁾ 등 극히 일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모습이다. 초석은 막돌 덩벙주초로 그 위에 모두 원주를 세웠다. 내부 고주상부를 마치 동바리처럼 일정한 높이로 덧엮어 키웠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4) 1동으로 이루어진 군사시설 객사의 진남관(국보 304호)은 15칸, 세병관(국보 305호)은 9칸임.

5) 월대는 2003년 9월에 발굴 때 드러난 유구를 바탕으로 2005년에 복원했음.

6) 진주객사 월대는 측면 오름 계단이 없음.

수 없지만 규모 확장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포는 외1출목이익공계로 기둥 상부에 헛침차형 부재 위에 익공살미 두 조를 첩놓고 그 위는 운공으로 장식했다. 익공살미는 날씬하게 뺀 수서형 촛가지이고 그 내부는 초각으로 궁글린 보아지가 보를 받고 있다. 헛침차형 부재는 주심포계의 헛침차와 달리 주두와의 사이를 띄우지 않고 익공살미와 연접해 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나주향교 대성전(보물 394호)과 전주객사(보물 583호)에서도 볼 수 있는데, 두 건물은 금성관과 달리 주심포계의 헛침차처럼 띄워져 있는 점이 다르다. 주간에는 뜬창방 아래에 쌍소로 파련각 화반을 놓았다. 팔작지붕의 추녀를 튼튼히 받을 수 있도록 왕지로 결구하고 포작한 귀포도 주심포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익공계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상부가구는 2고주 7량 가로 대량은 2~3부재를 겹쳐 보춤을 높이고 좌우측면의 퇴보는 곡재를 사용하여 우미량처럼 결구하였다. 대량 위에는 동자주익공으로 장식한 동자형동자주를 세워 주량작하고, 종보 위에는 화려한 파련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지지토록 했다. 천장은 평면의 중심부인 내진고주 안쪽 6칸통을 도리방향으로 4등분하여 유독 돋보이게 꾸몄다. 1열과 4열은 전체에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2·3열은 한단 더 높게 하여 한가운데만 우물반자로 했다. 한가운데 우물반자의 양측 대들보에 유일하게 시채한 용문양 단청은 특별한 공간임을 읽게 한다. 이처럼 특별히 강조한 내진고주 영역이 궤패 봉안 위치와 연관된 신성한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공간구성은 옥좌를 여간 배면에 두고 건물 한가운데 보개천장을 설치하는 궁전의 정전과 유사하다. 이는 향궐망배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던 17세기 때 금성관을 중건(1617년)하면서 궁전의 정전을 모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정간 배면 벽 앞에 궤패를 봉안하는 모습과는 다른 특이한 형식이다.

옥개부는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외기틀 없이 측면 서까래 위의 평주열 공포 주심선상에 종보를 추가하여 합각면이 평주열 외측에서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런 지붕가구 구성은 층량과 외기가 일반화되는 1700년대 이전으로 합각부에 종보를 추가하여 안정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1600년대 건물⁷⁾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단청은 전체적으로 모로 단청을 시채하였는데, 한가운데의 우물반자 양측 대들보에는 특별히 용문으로 장식하였다.

6. 가 : 금성관은 창건과 현상을 갖춘 처음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각종 기록과 구조양식으로 보아 지금 모습의 근본을 이룬 시기는 1617년(중건)이라 추정된다. 규모가 정청과 양익헌이 분리된 일반 읍치의 현존 객사 중에서 가장 크고 유일한 팔작지붕이다. 월대와 평면 및 입면 그리고 천장 등을 일반적인 객사와는 달리 궁전의 정전과 유사하게 구성한 점은 금성관만의 고유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이며, 또한 주심포계 양식의 요소를 채용한 익공계 공포 구성도 돋보인다.

7) 강화 전등사 대웅전(1621년, 보물 178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1632년, 보물 500호) 등

이러한 금성관은 나주 읍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원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며, 다른 객사와 뚜렷한 차별성을 띤 격조 높은 건물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축내력 관련 자료가 다소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13.06.07 | 대상문화재 | 나주 금성관 | | |
| 조 사 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한국건축사 | |
| | 소 속 | | 직위(직책) | 교수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①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 | | |
| | ② 문화재 명칭 | 나주 금성관 | | | |
| |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별지참조) | | | |
| | ④ 연혁·유래 및 특징 | (별지참조) | | | |
| |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별지참조) | | | |
| |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 | |
| | | <보호물> | | | |
| | | <보호구역> | | | |
|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 | | | |
|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 | |
| 종합의견 | (별지참조) | | | | |
|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3년 9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나주객사는 진산인 금성산을 배경으로 읍성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나주읍성은 고려시대에 이미 축성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여러번의 중수를 거친 후 세조 3년(1457)에서 5년(1459) 사이에 당시 나주 목사였던 김계회에 의해 완성되었다. 읍성은 나주천을 포함하고 있는 평지성으로 1872년에 제작된 나주목지도를 보면 말각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읍성의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동점문, 서성문, 남고문, 북망문)을 설치하였고, 각 문에서 이어지는 성내 주도로는 객사 앞에서 모이는 형태이다. 객사를 중심으로 주위에는 아사와 읍창, 향청 등 관아들이 자리하고 있어 객사는 위치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읍성의 전체 공간체계에서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나주의 도시 조직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나주읍성(사적 제337호)과 금성관 등 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일원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2. 연혁

■ 금성관은 나주 객사의 정청이다. 나주객사의 정확한 건립 년대는 알 수 없지만 1403년 객관의 동헌인 벽오헌에 대한 『동국여지승람』 기록으로 보아 이전에 객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성관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목사 이유인(재임기간 : 1487~1491)이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유인은 객사의 문루인 망화루를 건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때 나주 객사는 정청과 익헌, 삼문을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명정(趙明鼎)이 쓴 「금성관중수상량문」에 의하면 금성관은 1617년(萬曆 45)에 중수하였으며, 1775년에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금성관을 다시 중수하였다. 『나주목읍지』(1815)에도 목사 김개(金闔)가 재임 중이던 1616년에 금성관을 중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하곤(李夏坤)의 문집 『頭陀草』의 「南遊錄」에는 금성관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데 광해군 때 목사 김개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금성관을 크고 화려하게 조성하였다고 한다. 1740년부터 1743년까지 나주 목사로 재임한 윤흡의 「망화루중수기」에도 '금성관은 나주의 객관으로 그 크기와 화려함은 우리나라 공해 가운데 제일이라는 말을 들은바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금성관은 1616년~1617년 김개가 중건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화려하게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후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금성관을 1775년에 목사 이명중이 다시 중수하였으며(금성관중수상량문), 1884~1886년에도 목사 박규동이 중수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중수 사실 외에는 세부적인 중수 내용은 알 수 없다. 금성관은 1919년에 군청사로 사용하면서 외부 벽체와 창호, 내부 등이 개조되었으나, 1963년 보수한 후 1976년에 전면 해체 수리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3. 특징 및 지정가치

■ 나주객사는 발굴조사와 고증을 통해 전체적인 배치와 공간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나주 금성관은 전주객사(보물 제583호)와 함께 전라도를 대표하는 지방관아건물이다. 나주객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시대적 변화과정과 객사의 전체적인 배치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객사는 문루인 망화루에서 두 개의 중문을 거쳐 내삼문을 지나 정청에 이른다. 중문에서 월대까지는 답도가 시설되어 있었으며, 동□서 익현지와 회랑지, 부속건물지, 우물지, 배수시설도 확인하였다. 나주객사는 이와 같은 발굴조사와 고증을 거쳐 서익현과 동익현, 망화루, 중문을 복원하였고, 유구들을 정비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공간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 나주 금성관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객사의 정청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동□서 익현이 있는 객사 가운데 유일한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일반적으로 객사는 정청과 동□서 익현으로 구성되는 것이 정형적인 모습이다. 나주객사도 정청인 금성관과 동□서 익현으로 구성되었다. 정청은 정면 3칸이 일반적이며, 지붕의 형태도 맞배지붕으로 양 익현의 지붕 보다 한 단 높게 구성하여 정청의 위계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나주 금성관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전주객사(정면 3칸, 측면 3칸) 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다. 현존하는 객사의 정청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동□서 익현이 있는 객사 가운데 유일한 팔작지붕의 정청 건물이다.

■ 나주 금성관은 문헌기록과 상량문 등을 통해 건물의 연혁을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으며, 금성관의 역사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나주 금성관은 광해군 때(1616-1617) 목사 김개의 증건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南遊錄」에는 목사 김개가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크고 화려하게 조성하였다고 하지만 이때의 증건은 17세기 이후 예학의 발달과 함께 객사에서 유교적 행례가 중시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 후 금성관은 화재의 피해를 입고 1775년에 중수된 후 다시 1884~1886년에 중수되는데 고종 년간의 중수는 왕권강화의 상징적 도구로서 객사의 중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일제 강점기에 나주 객사는 군청으로 사용되며 많은 부분이 개조되었고, 주공간 외 지역은 일반인에게 불하되었다. 이처럼 금성관의 역사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 평면과 가구구조/ 공포의 시대성

금성관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내부는 모두 우물마루를 깔 대청이다. 간살의 구성을 보면 정면 3칸×측면 2칸의 내진 주위로 사방에 퇴가 둘러 있는 구조이다. 정면과 측면의 퇴간의 길이는 3,000mm로 똑같이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팔작지붕을 구성하기 위한 추녀를 정확히 45도로 놓이게 하며, 부재가 결구되는 부분에서 부재의 단면손실이 줄어드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건물의 규모에 비해 퇴간의 길이를 짧게 잡아 추녀의 뒷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처마 길이가 짧아져 지붕의 조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처마길이를 충분히 짧으면 동서익헌의 지붕선과 중첩되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 진다.

가구는 평면의 구조에 맞추어 2고주 7량가를 취하였으며, 내진고주와 외진주는 퇴량으로 결구하고 있다.

건물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공포는 외1출목 3익공식의 구조이다. 나주 금성관은 나주향교 대성전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나주향교 대성전의 공포도 외1출목 3익공식의 구조로 초제공이 주심포식 헛첨차와 같이 소로만으로 2제공을 받는 것 외에는 나주 금성관의 공포와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다. 또한 정면 5칸, 측면 4칸의 평면규모에 맞배지붕이 아닌 팔작지붕을 하였고 현존하는 대성전 가운데 가장 장엄한 형태를 하고 있는 점에서 나주 금성관과 많은 유사성이 있다. 금성관의 공포는 구조와 살미 형태 등을 볼 때 1775년에 중수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형의 변형

금성관은 사방에 창호가 설치되어 마치 궁궐의 정전과 유사한 외관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청의 전면은 개방된 퇴를 구성하거나 창호 또는 홍살을 설치하고 나머지 측면과 배면은 벽체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청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도 이와 같은 창호의 구성은 원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에 군청으로 사용하며 개조된 것을 1976년에 해체 수리하면서 충분한 고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4. 종합의견

나주 금성관은 1976년 해체 수리 시 충분한 고증을 거치지 않아 창호 등 변형된 부분이 있지만 전술한 특징 및 가치로 볼 때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35.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건부의 기준 검토

가. 제안사항

효율적인 문화재위원회 회의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이를 검토 받고자 합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건부의 기준

- 목적 : 효율적인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안건을 중요도에 따라 부의할 수 있도록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안건부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2013.6.28)으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기준(붙임 1참조)이 마련되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17m(5층)미만 건축행위를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17m미만의 건축행위가 전체의 87.6%에 달함.
- 건축문화재의 경우 대부분 단위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어 독립된 영역없이 바로 주변 환경과 접해있는 경우가 많아 작은 건물임에도 역사문화환경의 경관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건축규모별 건축문화재분과 심의 현황

| 구분 | 32m 이상 (10층 이상) | 32m 미만 (10층 미만) | 17m 미만 (5층 미만) | 11m 미만 (3층 미만) | 계 |
|-------|--------------------|--------------------|-------------------|-------------------|-----|
| 2010년 | 12 | 3 | 4 | 89 | 108 |
| 2011년 | 8 | 13 | 15 | 160 | 196 |
| 2012년 | 18 | 8 | 18 | 152 | 196 |
| 계 | 38 (7.6%) | 24 (4.8%) | 37 (7.4%) | 401 (80.2%) | 500 |

- 아울러 회의 안건을 위원회 및 소위원회 안건으로 구분 심의할 경우 회의 개최에 따른 과도한 직원 업무량 증가가 예상된다.

○ 안전부의 기준 적용계획

- 건축문화재분과 안건을 위원회 안건과 자체처리 안건으로 구분 처리하며, 소위원회는 대규모 사업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 개별안건별로 구성 운영
- 자체처리 안건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기준(안) 검토 보고(보존정책과 -2255(2013.4.24))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체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처리
- 합리적인 허용기준 조정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수의 감소 추진

○ 건축문화재분과 안전부의 기준

| 구분 | 문화재위원회 심의 | 자체검토회의 |
|------------------|--------------------------------|------------------------------------|
|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 | 설계검토 등으로 시행되는 문화재보수정비 외의 모든 행위 | |
| 허용기준 초과 | 원지형 보존 | 기존면적의 20%이상의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건축물의 신축 |
| | 그 이외 | 건축물의 높이가 11m이상의 건축행위 |
| 기타 시설물 설치 등 | 자체검토회의 이외의 사항 | 소규모 전기·통신주 설치 등 경미한 사항 불임2 참조 |

○ 자체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자체검토회의 운영계획 보고 참조
- 자체검토회의 결과 처리
 - 자체검토회의 결과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허가통지 후 추후 위원회 보고,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 통지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1]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기준

□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 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문화관광부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행위(단, 문화재청장이 설계 검토,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시행하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제외)
-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17m(5층)이상의 신축 · 증축 · 개축 등의 경우
 - 문화재 영향검토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17m(5층) 이상의 신축 · 증축 · 개축의 행위
 -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m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32m(10층) 이상의 신축 · 증축 · 개축의 행위
-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 · 관리 ·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경우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보존구역(건설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행위
 - 건축물의 높이가 11m(3층)이상에서 17m(5층)미만의 신축 · 증축 · 개축 등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등 각종사업
 - 문화재 영향검토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5m(1층)이상 17m(5층)미만인 신축 · 증축 · 개축의 행위
 -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m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건축물의 높이가 5m(1층)이상 32m(10층) 미만인 신축 · 증축 · 개축의 행위
 - 기존 전기통신시설(전신주 · 중계소 등)을 보수 · 교체하는 경우
 -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 · 임야의 형질 변경(지목변경에 한함) 행위
 -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당초 건물높이로 제한하여 기존 면적의 20% 범위 이상에서 증 · 개축하는 경우
- 그 밖의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자체검토 회의 운영계획

□ 자체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5인(전문위원 2명, 유형문화재과장, 유형문화재과 사무관 2명)
 - 전문위원은 우리 청 상근전문위원 중 2인 참여로 개최
- 회의운영 : 수시 개최

□ 자체검토회의 대상

- 건축물
 - 11m 미만의 건축행위(원지형 보존지역 제외)
 - 기존면적의 20%미만의 기존건축물의 증·개축 행위
- 기타 사항
 - 소규모 전기·통신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등
 - 산림가꾸기(수목벌채), 위험목 벌채 등 이와 유사사업
 - 재해 등에 의한 긴급보수 사업으로 당해문화재가 아닌 것
 - 확장이 없는 도로의 보수·포장 및 기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관로공사 등
 - 비닐하우스 등 일정기간 사용하는 임시시설물 등
 -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동일지번내의 위치변경
 - 기허가 받은 사항으로 허가기간 종료 등으로 취소된 경우로 동일한 사항일 경우

□ 회의 결과의 처리

- 자체검토회의 결과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허가통지 후 추후 위원회 보고,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문화재 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후 허가여부 통지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3-10-036

36.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시추조사 계획 변경보고

가. 보고사항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 중 시추조사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하여 추진 중인 ‘반구대암각화 보존 기초조사 용역’ 사업 중 시추조사 계획이 변경되어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동 안건과 관련하여 201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2013.07.18)에서 ‘가변형 투명 물막이(일명 카이네틱 댐)’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은 ‘조건부 가결’된 바 있음.
 - 조건 :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는 인정하되, 시추공 시추 등 세부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논의 후 재검토토록 함.
- ※ 발굴조사, 용역 기술평가팀 자문의견에 따라 시추조사를 금회 기초조사 용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 (1) 대상문화재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
 - 지정일 : 1995. 06. 23.
- (2) 보고내용 : ‘기초조사’ 중 시추조사 금회 제외
 - 주요 추진경과
 - ‘13.06.16 : 가변형 투명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 추진 협약 체결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 ‘13.07.05 :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 추진 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 합의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 '13.07.18 : 기초조사 계획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검토
- '13.09.03 : 기초조사 용역 착수(<주>선진엔지니어링)
 - 수행기간 : 2013.09.03~12.02(3개월간)
 - 수 행 자 : (주)선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13.09.05~10.02 : 기술평가팀(국조실 구성) 전체 및 분과회의 개최
 - 기술평가팀 토목·암석분야 분과회의 시 시추조사는 기초조사 단계 보다는 본설계 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13.10.11 : 시추조사 계획 변경 제출(울산시→문화재청)

○ 기초조사 변경사항

- 당 초 : 시추조사 포함
 - 암각화와 100m~500m정도 이격된 유사한 암질을 가진 지역에서 먼저 실험 후 시추기의 진동을 확인하여 진동의 영향이 문화재 진동 관리 기준 (0.2cm/sec) 이하일 경우 추진
 - 다이아몬드 코아 시추기를 사용하여 암각화와 20m 이상 이격된 곳에서 암반(수직 20m) 및 암벽부(수평 10m)에 각 2공씩 시추
- 변 경 : 시추조사 제외
 -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위해서 퇴적토를 제거하고 있으므로 암반층이 노출되면 시추를 하지 않고도 탄성과 탐사 및 육안으로 암석의 상태를 파악하여 투수계수 산정 등 기초조사 가능
 - 반구대 암각화가 문화재(국보 제285호)임을 감안하여 암각화 인근하천 바닥 및 암벽부에 대한 시추조사는 기초조사에서 제외
 - 향후 현장조사 및 추가 자료를 분석하여 시추, 그라우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안 제출 예정

라. 향후계획

- '13. 12월 초 : 기초조사 용역 및 기술평가팀 기술 평가 완료
- '13. 12월 중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관련 심의
- '14. 1월~6월 :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37.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체계 개선 추진 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에 대한 지정체계 개선에 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보, 보물 등의 지정시 객관적 평가기준의 마련과 함께 현재의 지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개선내용

- 각 문화재 유형별로 객관화 된 평가지표 개발(평가의 지역적, 인적 편차 최소화)
 - 기존 지정 문화재(국보, 보물)에 대하여 핵심 평가가치 도출을 통한 가치 평가의 객관적 지표 / 지수 개발
 - * 세계유산 등재 요건(국제적 기준) 참고 : “탁월한 보편적 가치” ≡ “가치가 큰 것”에 대한 정의 및 유형별 기준 제시
- 국보, 보물 지정 체계, 양식, 절차와 방법 등 지정시스템 전반에 관한 법제화 추진
- 보물 및 지방지정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지정 확대
 - 현재 보물 및 지방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새로이 개발한 지표와 지수를 적용, 재평가 대상 문화재 선정(일정 기준 또는 점수 이상 문화재)

(3) 추진일정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체계 및 평가기준 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13. 12

- 국보, 보물 등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2014. 2 ~ 5
 - 연구용역 기준 마련(동산 / 부동산 구분)
 - 국보, 보물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유형별 평가지표/지수 개발
- 평가지표/지수를 통한 보물 및 지방유형문화재 지정 가치 재평가 : 2014. 6 ~ 10
 - 현재 지정되어 있는 보물 및 지방유형문화재 중 대표적인 문화재 선정
- 가치 재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지정 확대(국보, 보물) 추진 : 2014. 10 ~
 - 전문가(자문위원)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 지방지정문화재, 보물 등 지정 등급 재조정(국가지정문화재 확대 목적)
- * 지정관련 법령 정비(평가기준 및 지표 등 포함) : 2014. 7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체계 개선 추진계획 보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체계 개선 추진 계획 보고

□ 목 적

- 국보, 보물 지정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시스템 구축
- 합리적인 문화재 지정체계 개선을 통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확대 기반 마련

□ 현 황

- 현재 국보, 보물의 지정 기준
 - 현재 국보, 보물 등 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문화재 유형-평가의 관점-가치가 큰 것” 등 3단계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치가 큰 것”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참 고」 국보 및 보물의 평가(지정) 기준

-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국보는 보물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으로 규정(문화재보호법 제23조)
- 예) 건조물중 목조건축물(보물) : 당탑, 궁전, 성문 등(문화재유형)으로 역사적, 예술적, 기술적(평가의 관점) 가치가 큰 것(가치의 유무)
- 국보의 지정 기준은 보물 중 특히 가치가 크거나, 우수하거나, 유래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국보에 대한 별도의 지정 기준 없음)

- 국보, 보물의 지정 체계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하거나 보물을 국보로 지정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이상의 조사 및 검토의견 필수)
 - 보물 지정시 기존 지방지정문화재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있거나 신규 발견·발굴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 지정 신청

□ 문제점 및 한계

- 각 문화재 유형별 평가기준(국보, 보물) 불명확

- 현재의 건조물(목조, 석조, 분묘), 동산문화재(전적·서적, 회화·조각, 공예 등) 등 유형별 가치평가 기준(평가 요소)이 명확하지 않음
 - * 현재 국보, 보물에 대한 평가기준은 대부분 문화재의 가치가 크다, 적다로 단순화
-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에 대하여 한정된 관계전문가 풀(pool)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국보, 보물의 지정제도 운영 체계 및 관련 규정 미흡
 - 지정대상 문화재 선정, 지정 신청, 자료 작성, 문화재위원회 상정 등에 있어 각 지정관련 기관의 기능과 역할 미규정
- 현재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체제로 추가·확대지정에 한계 존재(특히 건조물)
 - 현재 건조물의 경우 신규 지정대상은 지방지정 또는 근대문화재로 제한되어 있어 대상 문화재의 발굴 및 지정 확대에 한계 존재
 - * 동산문화재의 경우,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대국민 공모(기획 발굴) 등의 형식으로 추가 지정 추진

□ 향후 개선방안

- 각 문화재 유형별로 객관화 된 평가지표 개발(평가의 지역적, 인적 편차 최소화)
 - 기존 지정 문화재(국보, 보물)에 대하여 핵심 평가가치 도출을 통한 가치 평가의 객관적 지표 / 지수 개발
 - * 세계유산 등재 요건(국제적 기준) 참고 : “탁월한 보편적 가치” ≡ “가치가 큰 것”에 대한 정의 및 유형별 기준 제시
- 국보, 보물 지정 체계, 양식, 절차와 방법 등 지정시스템 전반에 관한 법제화 추진
- 보물 및 지방지정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지정 확대
 - 현재 보물 및 지방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새로이 개발한 지표와 지수를 적용, 재평가 대상 문화재 선정(일정 기준 또는 점수 이상 문화재)

□ 추진일정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체계 및 평가기준 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13. 12
- 국보, 보물 등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2014. 2 ~ 5
 - 연구용역 기준 마련(동산 / 부동산 구분)
 - 국보, 보물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유형별 평가지표/지수 개발

- 평가지표/지수를 통한 보물 및 지방유형문화재 지정 가치 재평가 : 2014. 6 ~ 10
 - 현재 지정되어 있는 보물 및 지방유형문화재 중 대표적인 문화재 선정
- 가치 재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지정 확대(국보, 보물) 추진 : 2014. 10 ~
 - 전문가(자문위원)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 지방지정문화재, 보물 등 지정 등급 재조정(국가지정문화재 확대 목적)
- * 지정관련 법령 정비(평가기준 및 지표 등 포함) : 2014. 7 ~

3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전남 영암군 소재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 택시승강장 설치 허가사항 등 7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검토의견) | 처리 일자 |
|-----------------------|---------------------------|---|--|------------|
| 소 계 | | 7건 | | |
| 영암 도갑사 해탈문 | 전남 영암 (월출산국립공 원사무소) | ○ 도갑사 입구 택시승강장 설치 -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72m - 건물규모 : 가로 6m, 세로 3.5m, 높이 3m | 허가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시행) | '13.10.21 |
| 고양 태고사 원중국사탑 | 경기 고양 (드림라인(주)) | <허가사항 변경허가> ○ 이동통신용 중계기 설치 - 변경내용 : 설치 위치변경 - 행궁터 중계기를 약40m 위치이동 | 허가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시행) | '13.09.17. |
| 경주 울동 마애여래삼존입 상 | 경북 경주 (○○○) |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변경사항 : 건축물 위치 변경, 구조변경 - 건축면적(연면적) : 67.54㎡ - 건축구조 : 조적조→경량철골조 - 층수/높이 : 지상1층 / 6.14m - 진입로 주변 차폐용 수목 식재 | 허가사항 변경허가 (부지내 배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규모와 높이 변경없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13.10.07 |

| 문화재명 | 소재지 (신청인) | 사업내용 | 처리결과 (검토의견) | 처리 일자 |
|--------------------------|-------------------------------|--|---|------------|
| 달성 도동서원 증정당·사당· 담장 | 대구 달성 (달성군수) | ○ 달성 도동서원 담장 보수 - 도동서원 내 증반소 옆 담장 구간 (약 3m) | 조건부 허가 (수해로 인해 담장이 무너진 사항으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담장을 보수 정비토록 함) | '13.10.10. |
|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 충남 예산 (충남 종합건설사업 소장) | ○ 우회도로 개설 - 시점 : 예산군 봉산면 고도리 - 종점 :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 도로연장 : L=1km, B=10m - 주요구조물 : 교량 1개소 (29.1m) | 허가 (기 허가('10.6.18.)된 사항으로 계획 변경없이 재신청되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13.10.14. |
| 대구 복지장사 지장전 | 대구 동구 (복지장사 주지) | ○ 설선당 모로 단청 ○ 문화재관리동 곳기단청 ○ 화장실 곳기단청 | 조건부 허가 (문화재관리동은 곳기단청, 모로 단청에 대한 문양모사도는 관계전문가 감수) | '13.10.15. |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경북 영주 (○○○) | <허가사항 변경허가>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물 위치 변경(대지 내) - 대지면적 : 1,571m ² - 건축면적 : 83.62m ² (+0.1m ²) - 연면적 : 70.28m ² (-9.64m ²)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싱글마감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 5m | 허가 (부석사에서 멀고 능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13.10.15.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